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503 2020. 9. 16.(수) 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임동현 의원

나. 발의일자: 2020년 8월 26일

다. 회부일자: 2020년 8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20년 9월 9일

(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O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임동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O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O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-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(안 제5조)
- 교육기부 협약 체결 및 취소 등(안 제6조 ~ 제7조)
-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9조 ~ 제14조)
- 포상(안 제15조)
- 시행규칙(안 제16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홍만표)

- 본 조례안은 사회가 보유한 다양한 인적·물적 자원을 유·초·중등 교육에 활용함으로써,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, 정의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,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교육기부 사업을 8가지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음. 그 중 제7호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집행청에서 '충북진로교육박람회'나 '충북직업교육종합 축제' 등 기존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교육기부 사업 중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

제출한 바 있음1). 이에 대해 검토하면, 조례안 제5조제7호의 경우 교육감이 교육기부 박람회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만 정한 것이고, 교육기부박람회 사업의 추진 방식은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, 집행청에서 제출한 의견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조례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유관 기관 등과 체결하는 교육기부 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, 안 제8조 에서는 교육기부 참여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의 설치, 기능,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, 안 제15조에서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교육감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16조에서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 도록 하였음. 아울러, 부칙에서 본 조례안을 2021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,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등에 소요 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본 조례안은 기존에 충청 북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각종 교육기부 사업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, 교육기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됨.

¹⁾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-6508(2020.8.18.)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 및 비용추계서 제출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 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 - O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다양한 교육자원 확보와 활용을 통한 공교육 역량 강화 및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교육기부" 란 공공기관·대학·기업·단체·개인의 지식, 기술, 경험, 시설 및 환경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·물적 자원을 유·초·중등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학생"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.
- 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교육기부 문화 확산과 교육적 활용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등 교육기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(이하 "추진계획" 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- 1.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
 - 2.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- 3.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- ③ 교육감은 효과적인 추진계획 수립・시행을 위해 교육기부를 활용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학교 현장과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5조(교육기부 활성화 사업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.
 - 1. 교육기부 자원 발굴 및 교육기부 참여 유도
 - 2. 진로·직업체험 및 자유학기제,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기부를 활용한 교육바우처 사업
 - 3.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
 - 4.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
 - 5. 교육기부의 교육적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
 - 6. 홈페이지,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교육기부 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홍보
 - 7.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
 - 8.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6조(협약의 체결)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진흥을 위하여 유관 기관, 단체, 기업 등과 교육기부 협약(이하 "협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
- 2.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
- 3.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
- 4.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
- 5.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 가능성 등
- 제7조(협약의 취소 등) 교육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 기부 및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- 제8조(정보통신망 활용)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 참여와 운영, 이용의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제9조(위원회의 설치 등)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 - 1. 제4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제5조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
 - 3. 제6조 협약체결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

- 제1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충청북도교육청(이하 "도교육청"이라 한다) 교육기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특정 성(性)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 - 1.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·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
 - 2. 교육기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

담당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.

- 3.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
- 4.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교육기부 업무
- 제12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,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.
- 제1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14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 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5조(포상)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를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 령

□ 자원봉사활동 기본법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4. 1. 7.]
- 제11조(학교·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)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·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 -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 - ③ 학교·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4. 1. 7.]
- 제12조(포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, 자원봉사단체,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4. 1. 7.]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초・중등교육법

[시행 2019. 12. 3.] [법률 제16672호, 2019. 12. 3., 일부개정]

- 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듀다.
 - 1. 초등학교
 - 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 - 3. 고등학교 · 고등기술학교
 - 4. 특수학교
 - 5. 각종학교

□ 유아교육법

[시행 2020. 3. 1.] [법률 제16875호, 2020. 1. 29., 일부개정]
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10. 3. 24., 2012. 3. 21.〉
 - 1. "유아"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.
 - 2. "유치원"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회의 참석 수당, 여비

3. 관련조문

○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: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 산정

나. 추계 결과: 17,000천원 소요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계
	(2021년)	(2022년)	(2023년)	(2024년)	(2025년)	
수당	3,000	3,000	3,000	3,000	3,000	15,000
여비	400	400	400	400	400	2,000
계	3,400	3,400	3,400	3,400	3,400	17,000

※ 「2020.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」으로 산정

다. 재원조달방안: 보통교부금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교육국 학교자치과장 최경희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: 천원)

	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,	네 입	3,400	3,400	3,400	3,400	3,400	17,000
보통교부금		3,400	3,400	3,400	3,400	3,400	17,000
세 출		3,400	3,400	3,400	3,400	3,400	17,000
위원회 수당 및 여비		3,400	3,400	3,400	3,400	3,400	17,000
재원 조달		3,400	3,400	3,400	3,400	3,400	17,000
의존 재원	소 계	3,400	3,400	3,400	3,400	3,400	17,000
	국고보조금						
	보통교부금	3,400	3,400	3,400	3,400	3,400	17,000
	특별교부금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자체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기타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